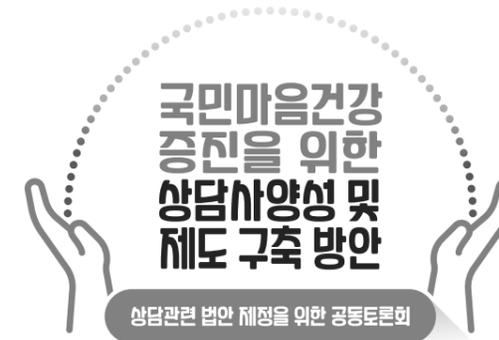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

2022.10.31(월) 10:00 ~ 12: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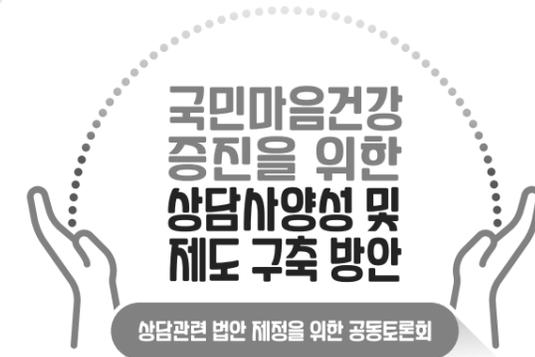
08:30 ~ 09:40	> 등록 및 안내
10:00 ~ 10:25	> 개 회 사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축 사 심상정(정의당),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주호영(국민의 힘), 강은미(정의당)
10:30 ~ 10:50	> 주제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마음건강증진과 심리상담 서비스 김희수(한세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회장) 2. 상담인력양성의 현황과 방향 김인규(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상담진흥협회장) 3. 상담관련 법안 비교 및 제도구축의 방향 윤동욱(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
10:55 ~ 11:40	> 토 론 좌 장: 김창대(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 토론자: 안동현(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전명숙(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태연(상담전문가) 정진영(국민일보 기자) 주 발제자 3인
11:40 ~ 11:50	> 질의응답
11:50 ~	> 폐회사 > 기념사진촬영



CONTENTS

축사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9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주호영 (국민의 힘 국회의원) _ 현장축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11
주제발표	1. 김희수 (한세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15
	2. 김인규 (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상담진흥협회)	29
	3.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변호사)	33
토론	1. 김태연 (대학상담센터 상담사, 상담전문가)	39
	2. 정진영 (국민일보 이슈 & 탐사팀 기자)	41
발제	1. 김수임 (단국대학교 교수)	45
	김창대 (한국상담 진흥협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교수)	
	김혜경 (LG 전자 가산심리상담실장)	
	박현민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문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원광대 한의전문대학원 한의예과 강사)	

2. 이선혜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가족치료학회)	47
3. 이현주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국가자격특별위원장)	51
4. 유미숙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국놀이치료학회 고문)	53
5. 김미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55
6.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부회장)	57
7. 황임란 (순천향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윤리위원장)	59
8. 김영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학술위원장)	61
9. 고흥월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편집위원장)	63
10. 고흥월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편집위원장)	67
이주영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부편집위원장)	
11. 허난설 (순천향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국제교류위원장)	73
12. 조남정 (우석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상담정책위원장)	77
13. 강연미 (한국상담학회 학생위원회)	79
14. 김장희 (경상국립대 교수, 한국대학상담학회)	83
15. 최승애 (최승애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중독상담학회)	85
16. 안희정 (안희정심리상담연구소,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	87
17. 이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총무이사)	89
18. 신윤정 (한국서울경기인천상담학회)	91
19. 황미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기획위원장)	93
20. 선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불교명상상담협의회)	97



축사

축 사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 폭염·폭우·혹한 등 거듭되는 기후재난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망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계십니다. 어르신 세대는 외로움으로, 청년 세대는 무력감으로, 중년 세대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미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우울감이 높은 시기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따라야 할 헌법정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활히 상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증하는 마음건강 서비스 수요에 비해 양질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부족합니다. 국민들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신뢰할 상담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우리 사회의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지 못해 부작용과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7월 14일 「상담사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낸 법안 외에도 국회에는 현재 상담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의견을 나누며, 문제점을 보완해 완성도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공동토론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전명숙 과장님을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상담 관련 학회 및 단체 회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 21.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축 사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종윤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심상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문성과 적절한 자격이 부족한 상담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 제정법이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지난해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심리상담서비스 공급체계를 공적으로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이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 전문 학회 관계자분들로부터 상담 인력의 현형과 양성 방안에 대한 고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담영역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담에 대해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꼽으라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은 마음건강을 돌보는 응용심리학의 영역으로 기초학문인 심리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정보화의 고도화로 수 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경쟁과 고립이 확산되면서 직장,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고립의 시대를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을 돌보는 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상담서비스의 난립을 막고 올바른 상담서비스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담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법적 체계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상담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상처 입은 국민들이 마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 학과의 졸업생이나, 특정 기관을 통한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충분한 실습을 통해 양질의 상담사가 양성되고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단절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기후위기, 정치위기가 가중되면서 자신과 가족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마음건강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들은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에서 발급하는 가짜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로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 양성과 관련 법안에 힘을 합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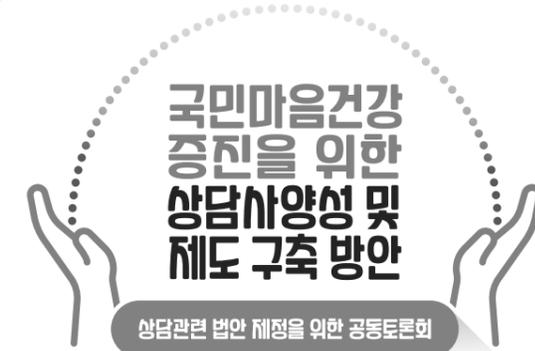
나의 가족과 친구가 상담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신뢰로운 상담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시군구별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취약계층 대상의 상담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상담의 공익성을 높이는데 애쓰겠습니다.

저는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담관련 법안 공동토론회’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상담사분과 관련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국민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서비스

김희수
(한세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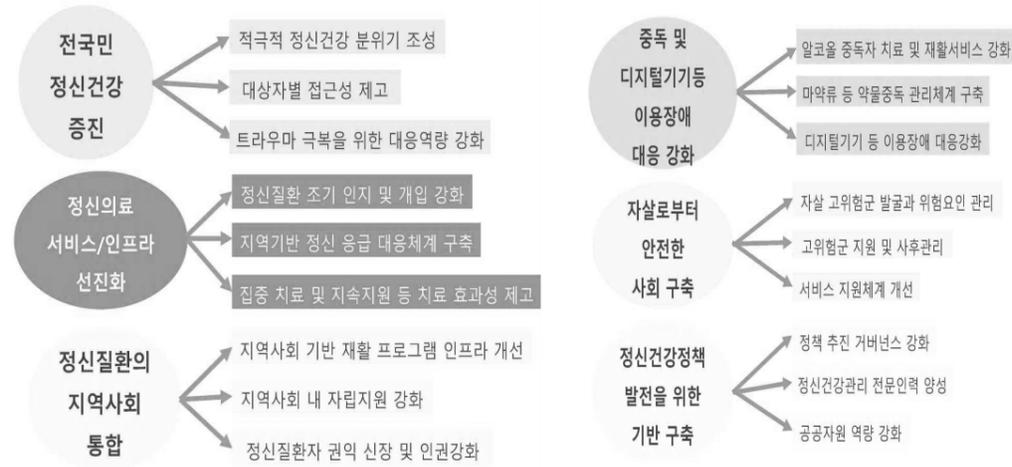
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전략과 과제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민 대상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적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개입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지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
정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부처·지자체 분절적 대응 (민간) 정신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범정부적 대응 (민간) 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

[그림 5]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2021) p. 10)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 주기적 정신건강을 관리 하고, 증상의 관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정책의 주체는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나 다양한 부처(아동·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 미취업 및 실업 청년, 근로자는 고용부, 다문화 가족은 여가부, 탈북민은 통일부, 선원은 해수부 등)가 주체로서 확대되어야 함. 이는 정부가 정신건강 지원의 예방 및 재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의 대상과 문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추진의 주요 과제는 ‘비의료’ 영역 안에서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주체와 유형을 명료화하고,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의료’ 영역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음



[그림2] 제2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6대전략과 주요 핵심 과제(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2021)

2)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심리상담

(1) 심리상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 심리상담 영역에 대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화, 표준화 및 체계적 모듈 개발, 개정이 이루어짐
 - 2013년 직업상담 NCS 개발, 2014년 청소년상담복지 NCS 개발, 2015년 심리상담 NCS 개발
 - 직업상담(2020년 개정), 청소년상담복지(2016년 개정, 2022년 개정 중), 심리상담 분야(2021년 개정)에 대한 NCS는 현재까지도 직업 환경과 실무 영역을 고려하며 현재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NCS에서의 심리상담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상에서 심리상담의 유관 분야는 직업상담, 심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 3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표 1>과 같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되어 있음
 - 심리상담은 NCS 상에서 대분류 07의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의 상담, 소분류 03의 심리상담, 세분류 01의 심리상담으로 분류됨. 심리상담 안내, 심리검사 활용, 심리상담 홍보 등 총 21개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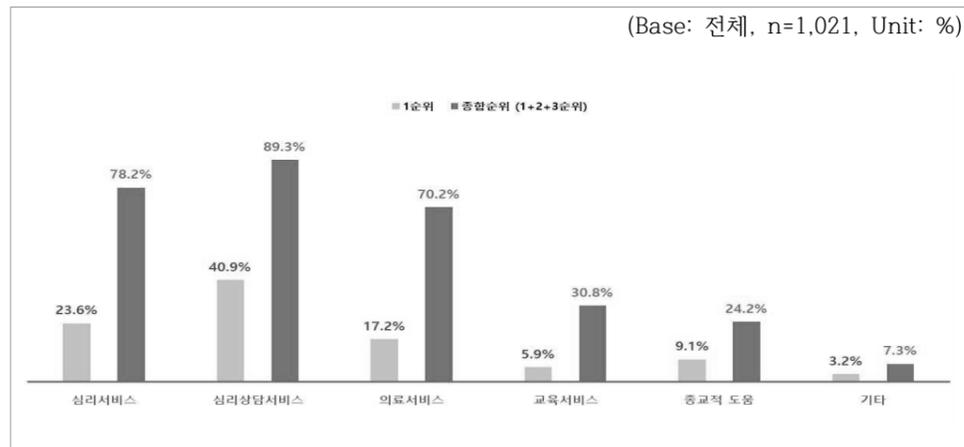
<표 10> NCS 상에서의 심리상담 관련 유관분야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복지	직업상담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07. 사회복지·종교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02. 상담	02. 상담
소분류	03. 심리상담	02. 청소년지도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심리상담	02. 청소년상담복지	01. 직업상담
능력단위	01. 심리상담 안내 02. 접수상담 03. 내담자 의뢰·연계 04. 개인심리치료상담 05. 집단상담 06. 관계자 상담 07. 위기상담 08. 심리상담 교육 09. 심리검사 활용 10. 심리상담 정보관리 11. 심리상담 자문 12. 수련상담자교육 13. 심리상담 수퍼비전 14.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15. 재난극복 상담 16. 트라우마 심리치료 17. 부부·가족상담 18. 비대면 심리상담 19.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20. 심리상담 기획·행정 21. 심리상담 홍보	01. 심리평가 02. 집단상담 03. 청소년부모상담 04. 상담자문 05. 상담수퍼비전 06. 청소년상담 연구개발 07. 내담자 응대 08. 접수면접 09. 상담준비 10. 개인상담 11. 전화상담 12. 게시판·메일 상담 13. 채팅상담 14. 위기상황 확인 15. 위기지원 16. 진로상담 17. 진학 및 취업지원 18. 생활기술교육 19.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준비 20.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운영 21. 청소년 교육훈련 준비 22. 청소년 교육운영 및 평가 23.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24. 지역자원 연계 협력	01. 직업상담 기획 02. 직업상담 홍보 03. 직업상담 진단 04.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비대면 직업상담 06. 진로상담 07. 취업상담 08. 직업복귀상담 09. 직업적응상담 10. 다문화직업상담 11. 재활 직업상담 12. 해외취업상담 13. 창직상담 14. 직업훈련상담 15.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6. 심층직업상담 17. 직업상담 수퍼비전 18. 직업상담연구 19. 직업정보 수집 20. 직업정보 분석 21. 직업정보 체계화 22. 직업정보 가공 23. 직업정보 제공 24. 취업지원 행사운영 25.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26. 직업상담 행정

(2)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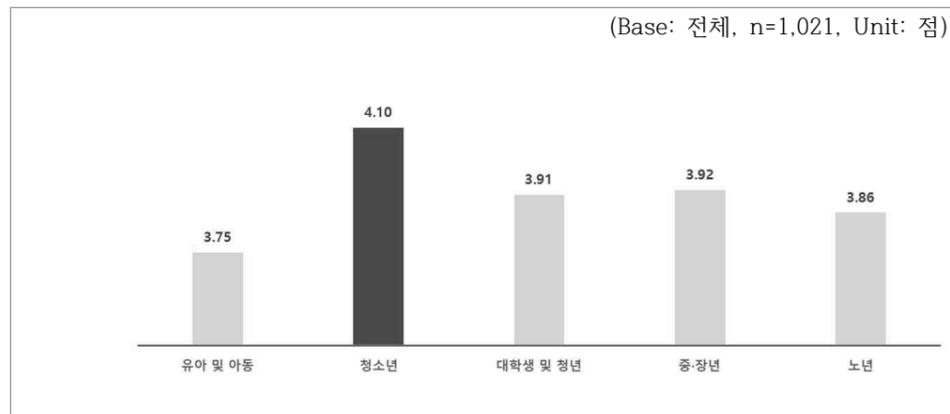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에서 심리상담이 갖는 비의료영역으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심리상담에 대하여 갖는 인식을 구체화하고자 함
 - 조사 전문기관 (주)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뷰 결과를 참고하여 인구통계학적 질문 10문항, 국민인식조사를 위한 29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로 국민 20~50대 1,021명에게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김영근 외, 2022).

-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한 검색어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총 2,142개의 검색어가 도출되었음. 이 중 '심리상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104건), 고민상담(92건), 네이버(90건), 정신과(73건), 우울증(71건), 고민(51건), 구글(39건), 심리치료(38건), 상담센터(32건), 심리(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민이 있을 때 선호하는 전문적인 도움의 종류를 묻는 문항은 '심리상담서비스'가 40.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심리서비스'(23.6%), '의료서비스'(17.2%), '종교적 도움'(9.1%), '교육서비스'(5.9%), '기타'(3.2%) 순으로 나타남. 종합순위(1+2+3순위)를 살펴보면 '심리상담서비스'가 89.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심리서비스'(78.2%), '의료서비스'(70.2%), '교육서비스'(30.8%), '종교적 도움'(24.2%), '기타'(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고민이 있을 때 선호하는 전문적인 도움

- 심리상담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청소년(4.10점), 중·장년(3.92점), 대학생 및 청년(3.91점), 노년(3.86점), 유아 및 아동(3.75점) 순으로 확인됨. 모든 연령대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가 과반수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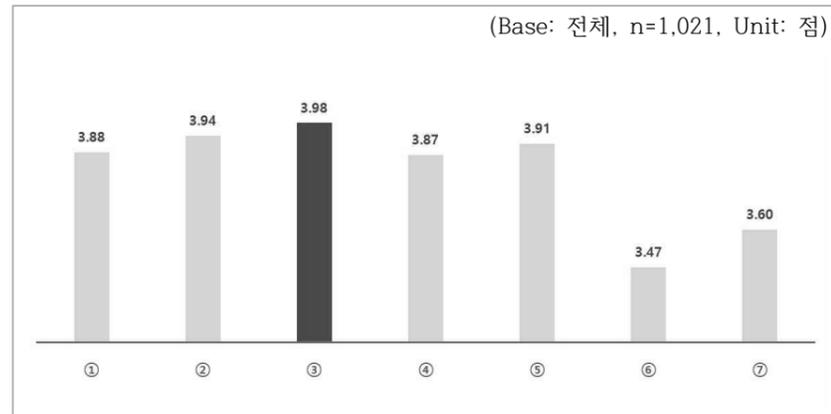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대별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는 정도

-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5점 리커트척도 상에서(1점: 전혀 도움이 안됨, 5점: 매우 도움이 됨) 우울·불안 등의 감정적 어려움(4.21점),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인한 어려움(4.18점), 재난이나 사건, 사고로 인한 심리적 외상(3.97점),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3.95점), 가족관계의 어려움(3.94점),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인한 가족이나 주변의 어려움(3.85점), 친구 및 동료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3.67점), 학업이나 진로 등 적응상의 어려움(3.58점), 인생의 중대한 선택 등의 문제해결(3.47점),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3.44점) 순으로 평정하였음. 모든 경우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가 과반수 이상이었음

<표 11>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상황

구 분	점수(5점 만점)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3.94
친구 및 직장 동료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3.67
우울·불안 등의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4.21
학업이나 진로 등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3.58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3.95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4.18
재난이나 사건, 사고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3.97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3.85
인생의 중대한 선택 등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3.47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3.44

- '심리상담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관련한 문항에서 심리재활(3.98점),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3.94점), 마음건강 관련 교육(3.91점), 개인 및 집단상담(3.88점), 정신질환자에게 의료기관 안내 및 연계(3.87점), 마음건강 관련 연구(3.60점),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자문(3.47점)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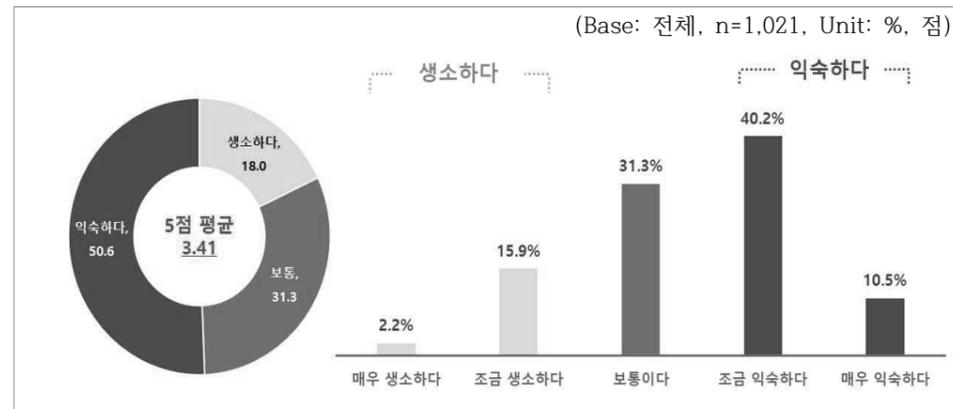


[그림 5] 영역별 심리상담 서비스에 해당되는 정도

<보기>

- 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②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③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 및 트라우마 회복 등의 심리재활
- ④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람에게 의료기관 안내 및 연계
- ⑤ 대화 방법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의 마음건강 관련 교육
- ⑥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마음건강 관련 자문
- ⑦ 마음건강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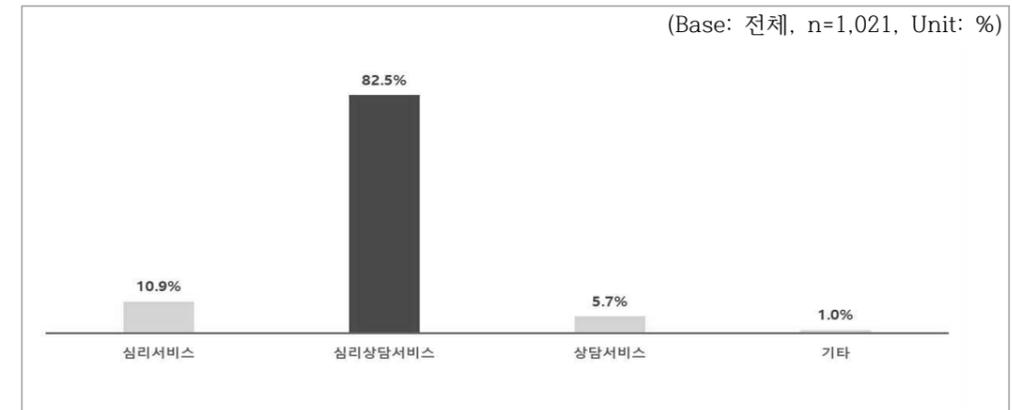
-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에 관한 응답에서 익숙하다(조금 익숙하다, 매우 익숙하다)는 응답이 50.6%였으며, 생소하다(조금 생소하다, 매우 생소하다)는 응답은 18.0%로 확인되었음



[그림 6]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서비스’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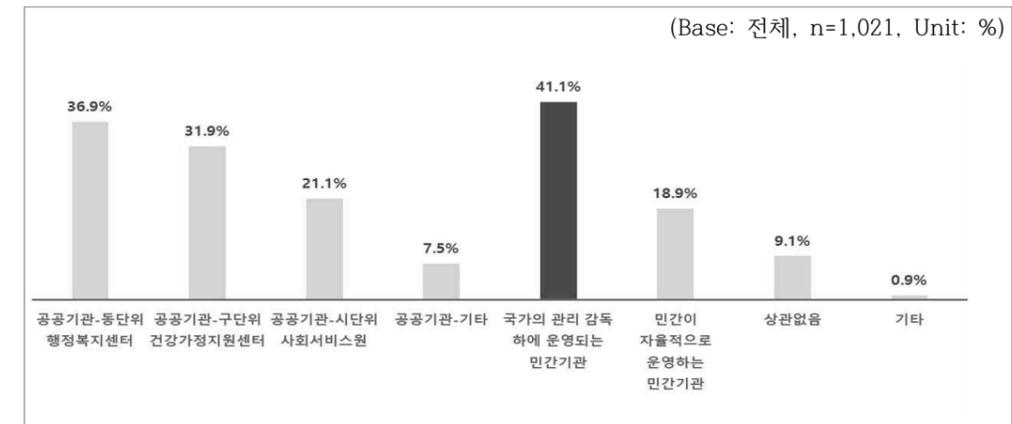
- 마음건강 관련 전문적 서비스를 일컫는 적절한 용어를 묻는 문항에서 ‘심리상담서비스’가 8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심리서비스’(10.9%), ‘기타’(1.0%) 순으로 확인되었음. ‘심리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마음건강과는 다른 종류의 영역까지 연상된다’(45.2%), ‘무엇

을 제공하는 용어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43.2%), ‘용어 자체가 낯설다’(24.2%)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7] 전문적인 도움 서비스로 적절한 용어

- 이용하고 싶은 ‘온마음 건강서비스 지원 장소’를 묻는 문항은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민간기관’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공기관-동단위 행정복지센터’(36.9%), ‘공공기관-구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31.9%), ‘공공기관-시단위 사회서비스원’(2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8] 이용하고 싶은 ‘온마음 건강서비스’ 지원 장소

2.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제화

1)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념과 역할

가.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념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장호, 2005)
- 다양한 개인과 가족, 집단들이 마음건강과 웰빙, 교육, 그리고 직업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임파워하는 전문적인 관계(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0)

- 상담의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29개의 상담 기관들에게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 상담의 정의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도출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았음

<표3> 29개 상담 기관들의 델파이조사 결과: 용어

용어	빈도	용어	빈도
웰빙	20	집단	9
임파워	20	개인	8
전문성	19	마음건강	7
전생애	16	예방	6
관계	16	도움	6
성장	14	근거	5
도전	10	교육	5
인간	10	커리어	4
가족	9	문화	3

나. 심리상담 서비스의 역할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정책에서 심리상담은 '비의료' 영역의 중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전국민을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상으로 아우를 수 있음

- 심리상담은 영·유아부터 노인계층까지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전생애적 서비스를 제공함. 그동안 심리상담은 시·군·구 단위의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의 정부 및 민간 등 다양한 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심리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취업·실업 청년, 감정노동자, 취약계층, 이주민, 선원, 탈북민 등의 제도의 사각지대 밖에 있는 특수계층까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함. 심리상담은 민간의 영역에서 복지부 관할의 노인이나 임산부, 교육부 관할의 학생, 고용부 관할의 근로자·실업자, 여성가족부 관할의 여성·이주민, 통일부 관할의 탈북민, 국방부·병무청 관할의 병역의무자 등의 다양한 정부의 부처 및 지자체 산하에서 국민들의 삶과 마음건강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지원해 오고 있었음
- 심리상담은 일상적 고민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의 문제까지 마음건강의 심각성 측면에서 전 스펙트럼을 다룰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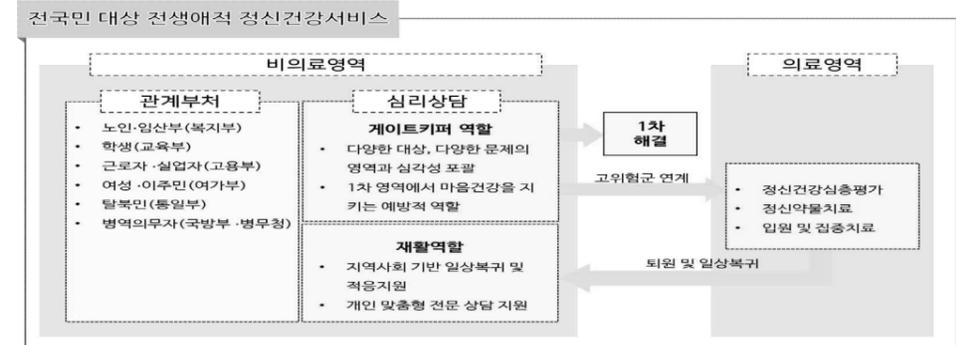
○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예방적 역할

- 심리상담의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문제를 평가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자나 마음건강의 위기의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심리상담은 게이트키퍼로서 마음건강에 해가 되는 일상적 고민과 적응 문제, 스트레스 관리 등의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마음건강이 심각한 경우를 기민하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예방적 역할

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음

○ 고위험 계층의 일상으로의 복귀 및 적응을 돕는 재활적 역할

- 중증 정신질환자나 고위험자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뒤에 결국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직업과 관계에서 적응해야 함. 따라서 심리상담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의 고위험 계층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그림9] 비의료영역 전문서비스로서 심리상담의 역할

2) 심리상담 법제화를 향한 노력

- 2008년 군상담 영역을 시작으로 학교, 병원 장면 등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김만웅, 2010; 김미혜, 김소희, 2010; 김완일, 2008; 김인규, 2009)
- 2009년 학교상담진흥법과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과 같이 학교상담법을 발의하였음(이철우의원, 2019)
- 황준성 등(2011), 임은미 등(2016), 장덕호 등(2019)이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법률안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김소아, 김인규(2021)는 그간 제시되었던 여러 학교상담 관련 법안들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 후 법률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였음
- 앞서 언급한 여러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법의 모법인 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됨(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김영근 등, 2012).
- 국민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비전문적, 비윤리적 심리상담 행위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시됨(박지윤, 2019. 05. 22; 상담정책포럼, 2019; KBS, 2019. 07. 19)
- 심리상담의 법제화를 위해 현재까지도 다양한 심리상담 영역에 대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화, 표준화 및 체계적 모듈 개발, 개정이 이루어짐
- 2013년 직업상담 NCS 개발, 2014년 청소년상담복지 NCS 개발, 2015년 심리상담 NCS 개발.

직업상담(2020년 개정), 청소년상담복지(2016년 개정, 2022년 개정 중), 심리상담 분야(2021년 개정)에 대한 NCS는 현재까지도 직업 환경과 실무 영역을 고려하며 현재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심리상담 자격의 국가자격증화를 위해 2014년 6월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창립을 기점으로 정신보건상담사(2015년 정신건강중진상담사로 명칭 변경) 자격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신보건상담사의 정신보건전문요원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움직임. 이때 2014.12.5. 이목희 의원, 2016.9.5. 조태경의원이 정신보건상담사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의 포함에 대한 법안을 발의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및 유관 단체의 반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됨
- 심리상담 자격의 국가 자격증화를 위해 (사)한국상담학회와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각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회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을 국가공인자격화 시키려 다각적인 시도를 했지만 국가공인자격화를 현재까지 성립하지 못함
-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해 김영근 등(2012)이 한국 상담사법으로서 심리상담에 대한 법률적 구성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으며, 김정진(2016)은 상담사의 권리보장 및 전문성 확립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사)한국상담학회와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를 통해 법무법인 서희(2020)는 기존의 심리사, 심리상담사, 상담사 등 다양한 용어 중 심리상담의 용어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며 법률 용어의 합의된 틀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법제적 틀을 제시하였음
- 현재까지도 심리상담 관련 모법 제정을 위해 (사)한국상담학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등 다양한 학회 및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심리, 상담, 심리상담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격 기준과 같은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최정화, 2021; 법률사무소 서희, 2020)

3)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

- 심리상담의 전문직화
 -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은 내담자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격인증 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강조함(최서운, 최한나, 2021)
 - 서영석, 안하얀(2022)은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서 국가 수준의 자격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특정학과의 독점 방식의 법제화 진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한 사람의 권위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또한 관련분야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심리상담의 표준화
 - 심리상담 관련 학회마다 상이한 기준 및 운영 지침, 상담 장면마다 적용되는 상담 종류의 차이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모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NCS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김인규, 2021)
 - NCS와 같이 심리상담에 대한 표준화된 모듈의 제시는 심리상담의 전문성과 고유성, 체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음(김인규, 2021; 이상민, 2020)

- 심리상담 장면에서 NCS와 같은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 학회 및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단일화된 의견이 필요함(김인규, 2021; 성현모, 이상민, 2021; 이상민, 2020)
- 확립된 모듈의 원만한 운용을 위해서 상담 장면에 따른 현실적 운용 방안이 차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김희수, 2021)

○ 법안의 절충에 대한 논의

- 대중의 인식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심리”나 “상담”이라는 용어보다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마음건강 전문가라는 대중적 인식이 확립됨(서희, 2020). 이는 추후 법제화 이후 “심리상담”이라는 용어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경제성의 측면을 확립할 수 있음. 정부의 마음건강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심리상담’을 주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심리서비스’보다는 ‘심리상담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

3. 결론

- 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의 심리상담의 업무는 근본적인 과제이나,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가진) 전문 인력이 미비한 실정임. 온 국민의 자살 문제, 우울 및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 문제, 미디어 중독 및 알코올 사용 장애와 같은 중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각 문제 상황에 대한 심리상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소수의 인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처치식의 전문성으로 미비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의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업무의 체계적 분담화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립이 필요함. 또한, 정신건강 전문 업무 중 심리상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립을 위해 심리상담 전담 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상담의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심리상담의 업무는 전문 의료의 영역이 아닌 비의료의 영역으로서 예방적 역할과 정신재활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목적과 의의가 있음. 그렇기에 전문 의료의 영역이 아닌 비의료 영역으로서의 접근이 주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수요도, 현장의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심리상담 서비스가 주축이 되어 체계적 개입 모듈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대한 검증 및 관리 감독 기구도 추가적으로 갖추어져야 함. 이때 전문성을 갖춘 표준화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제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심리상담 영역의 대표적인 국가 자격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있으며, 민간자격은 (사)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가 대표적임. 하지만 이들의 직무를 살펴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음.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 등의 논란이 일어나면 중재 등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며 협업체계 구성조차 어려운 실정임. 그렇기에 심리상담 관련 국가 및 민간 자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국민적 마음건강 증진에도 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현재 발의된 심리서비스법의 자격 규정이 특정 직역(이미 현행 국가 자격제도 아래 있는 임상심리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심리상담사 관련 법제적 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나아가 심리상담 영역에서 심리상담사가 중심이 된 전문 자격에 대한 국민의 혼란 감소 및 신뢰도 확보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의 직업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국가 자격조차도 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의 심각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따라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모든 국가 자격을 아우르면서도 온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법(심리상담사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20년4월21일).우리말샘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16401&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16401&viewType=confirm)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03. 25). 국립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0. 보건복지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1.14.).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김만웅. (2010). 이혼숙려기간과 상담법제화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48), 639-685.
 김미혜, 김소희. (2010).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0), 304-317.
 김소아, 김인규. (2021). 학교상담법제화 과정과 이슈. 한국교육개발원.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김영근, 라수현, 최동현, 송현구(2022). 심리상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제 2차 협의체 상담학회 연구보고서.
 김완일. (2008). 군상담 모형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21-241.
 김인규. (2009).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교육학연구, 47(1), 19-47.
 김인규. (2021). 한국 상담이 나아갈 방향. 상담학연구, 22(4), 29-38.
 김인규, 손요한. (2020).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69-77.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김희수. (2021). 상담기관 대학평가제도와 상담 법제화 추진 방향의 쟁점. 상담학연구, 22(5), 1-10.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 (LPC) 와 인증 프로그램 (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박지윤. (2019. 05. 23.). 줄줄이 불기소 처분... 법망 빠져나가는 '상담실 성범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1549727913>
 법률사무소 서희. (2020). 심리상담사법 제정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2021).「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분기별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 12. 14).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상담정책포럼. (2019). 심리상담 법령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제3회 상담정책포럼.
 서영석, 안하얀. (2022). 상담의 전문직화: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1-15.
 서정숙의원 발의. (2022. 04. 29). 심리사법안. 15453.
 성현모, 이상민. (2021).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담학연구, 22(4), 1-10.
 이목희의원 발의. (2019. 05.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912861.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이신형. (202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세분류 심리상담 개편과 확대를 위한 연구. 상담학연구, 23(1), 17-26.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Hakchisa.
 이철우의원 발의. (2019. 05. 24.). 학교상담진흥법안, 190237.
 임은미, 이상민, 조남정, 진명식, 이수정. (2016). 전문상담교사 직무매뉴얼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장덕호, 김성기, 이덕난, 김혜정, 전하람, 김효선, 배희분. (2019).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조경태의원 발의. (2019. 05. 2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2146.
 최서운, 최한나. (2021). 한국 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983-1014.
 최정아. (2018).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19(3), 341-366.
 최정아. (2021).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11-27.
 최종윤의원 발의. (2022. 03. 28). 심리상담사법안. 14984.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Bergman, D. M. (2013). The role of government and lobbying in the creation of a health profession: The legal foundations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67.

Kaplan, D. M., Tarvydas, V. M., Gladding, S. T. (2014). 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The new consensus definition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3), 366-372.

KBS. (2019. 07. 19.). 추적60분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

주제발표 2

상담인력 양성의 현황과 방향

김인규

(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상담진흥협회장)

1. 상담인력 양성 현황

국내 상담인력 양성은 대학/대학원에서의 상담교육과정을 통한 양성과 각종 상담자격과정을 통한 양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대학/대학원의 상담교육과정

2020년 8월 현재 대학알리미에 등록된 상담학과(전공)는 대학교 143개, 전문대학 60개, 대학원 336개로 총 539개에 이른다. 이는 학과명에 상담이 들어간 경우이며,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에서 세부전공으로 상담전공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이런 상담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세부전공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학과에서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학과(전공)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졸업자들의 상담역량이 어느 수준인가를 뚜렷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상담학과(전공)의 현황

구분/분야		교육 상담	상담 심리	복지 상담	가족 상담	초등 상담	기타	합계
대학교	각종학교(대학교)	0	1	0	1	0	0	2
	대학교	6	42	28	10	0	11	97
	사이버대학	1	27	3	4	0	5	40
	산업대학	0	2	2	0	0	0	4
	소계	7	72	33	15	0	16	143
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0	2	17	1	0	0	20
	전문대학(3년제)	4	3	20	5	0	2	34
	사이버대학(전문대학)	0	3	3	0	0	0	6
	소계	4	8	40	6	0	2	60
대학원	일반대학원	4	34	6	6	0	8	58
	전문대학원	2	14	4	0	5	4	29
	특수대학원	61	124	18	15	14	17	249
	소계	67	172	28	21	19	29	336

출처 : 대학알리미 자료 편집(2022. 8)

(2) 상담자격과정

상담자격과정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상담분야 국가자격으

로는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이 있다. 이 자격들은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직업상담 등의 분야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양성과정, 자격검정, 연수 등에서 상담실무역량 훈련과 검정 부족의 문제 제기되어 상담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담분야 민간자격은 3,500여개의 민간자격이 난립하여 있고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자격은 엄격한 수련과 검정과정을 거쳐 높은 수준의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자격은 낮은 수준의 교육/수련과 허술한 자격관리로 인해 전문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고, 현재 상담법 발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김인규, 장숙희(2019)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상담분야 민간자격은 4,054개를 분석하였다. 자격 등록 상담자를 배출한 실적이 있는 자격은 744개였고, 자격취득 인원의 누적실적이 500명 이상이거나 연평균 100명 이상인 자격은 132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해당 자격을 시행하는 기관 및 개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했던 77개의 자격검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별도의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14개이었다. 35개의 자격은 교육과정 이수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의 이론시험을 거쳐 발급되고 있었으며 10개의 자격만이 이론시험, 면접, 수련기준, 보수교육 또는 자격유지연수 자격검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상담인력양성의 방향

향후 국내 상담인력양성의 방향으로서는 첫째, 상담전문가 양성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상담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국가자격, 민간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상담전공 교육과정이 일정한 기준과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으로서의 상담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를 표준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상담교육인증이 필요하다.

표 2. 인증영역과 하위영역(평가부문)

영역	M	SD	하위영역(평가부문)	M	SD
학과운영	6.43	.49	비전목표	6.43	.49
			운영체계	6.57	.49
			운영 개선	6.29	.45
교육과정	6.86	.35	프로그램 학습목표	6.14	.64
			교과목 운영	6.29	.67
			실습운영	6.43	.73
학 생	6.43	.49	학생 선발	5.00	1.51
			학생 지도	5.57	1.59
			학생지원	5.57	1.59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	6.00	.76
교 수	6.57	.49	교수 확보	6.57	.73
			교수 업적	6.14	.83
			교수 개발 지원	6.29	.67
교육환경	6.71	.45	행정체계	6.00	.76
			재정지원	6.14	.99
			교육시설	6.57	.73
교육성과	6.14	.6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6.29	.67
			교육성과 평가	5.86	.64
			졸업생 진로	5.43	.90

출처 : 김인규, 조남정(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상담자격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상담교육과 수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심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 직업상담 영역에서 NCS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직업상담사 이외에는 NCS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자격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국가자격, 민간자격의 내용, 수준, 검정 등의 관리체계를 NCS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하면 상담자격과 상담사 양성의 체계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법제화를 통해 상담인력 양성체계의 법적 강제력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상담인력을 정의하고 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맡겨두었던 상담서비스 영역을 국가가 공적영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의 상담인력 양성 제도가 법적 체제 안에서 강제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양성된 상담인력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학부과정 연구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학부 상담학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연구. 상담학연구, 16(4), 301-319.

김인규, 조남정(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2) 대학원과정 연구

이숙영, 김창대(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최아롱(2012). 한국의 상담자 전문교육과정의 적합성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국가자격 연구

김인규, 조남정 (2011).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계속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41-60.

김희정, 유형근, 정여주, 선혜연(2015).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 교육부.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민간자격 연구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력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김인규, 김승완 (2020).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방안. 교육종합연구, 18(3), 43-64.

주제발표 3

상담관련 법안 비교 및 제도구축의 방향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변호사/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1. 상담관련 법안의 입법 발의

보건복지부는 2021. 1. 14.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2021년에 심리상담 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022. 3. 28. 「심리상담사법안」(의안번호 14984)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2022. 3. 31.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039)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2. 4. 29. 「심리사법안」(의안번호 15453)을 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22. 7. 14. 「상담사법안」(의안번호 16456)을 대표 발의하였고 오늘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상담관련 법안의 자리매김

보건복지부는 종래 ‘정신건강’이라는 용어 대신 ‘마음건강’ ‘심리상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신설 국가자격 증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표1]

	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법안	국민마음건강법안	심리사법안
정의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 전략 등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과 대면·비대면 대화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사가 일상 다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비교	비의료			의료

‘심리상담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중분류 02. 상담』『소분류 03. 심리상담』『세분류 01. 심리상담』에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담관련 법안에서 신설되는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대분류 04. 보건·의료』『중분류 01. 보건』『소분류 01. 의료기술지원』과 구분되는 ‘비의료 심리지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상담관련 직역 국가자격증의 성격

향후 상담관련 직역에 관한 국가자격증인 신설되고 경과규정 기간이 도과하면 종래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이 발행한 민간자격증은 효용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표2]

	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법안	국민마음건강법안	심리사법안
정의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비교	독점적 면허 법안			느슨한 면허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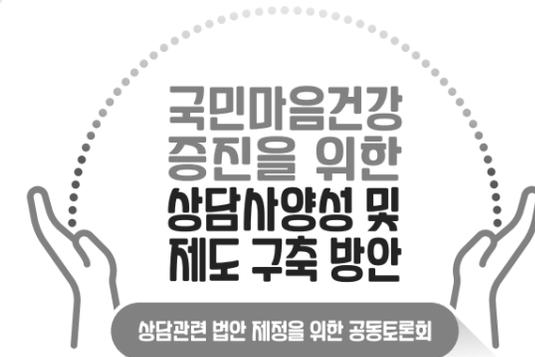
향후 상담관련 직역에 관한 신설 국가자격증은 무자격자에 의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통과한 자격자들에게 공적 관리·감독, 질 관리(gate-keeping)를 통한 독점적 면허 법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담관련 법안 제도구축의 방향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관련 법안은 국민의 마음건강증진, 검증된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담관련 직역의 다수 이해관계자들은 위 공익 목적을 이루는 데에 큰 뜻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단체들이 세부적인 직역의 명칭, 전공 영역 제한에 매몰되어 자신의 기득권과 직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것이고, 상담관련 법안의 입법 성사, 국가자격증 신설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담관련 법안의 제도구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등재된 ‘심리상담’ 분야의 이해관계인들을 포괄하고 현실에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

토론 1

상담실무자가 생각하는 온 국민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의견

김태연

(대학 상담센터 상담사, 상담전문가)

안녕하세요. 대학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년차 상담전문가 김태연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실무자입니다. 이 기관들은 무료 또는 아주 적은 소정의 금액만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많았고 자해나 자살위기, 우울증, 공황장애 등 보다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찾는 분들도 만나왔습니다.

1. 심리상담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심리상담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이며, 그 범위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음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심리상담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게 되는 수단이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자기이해,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이용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리상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심리상담이 굉장히 대중화된 영역이 되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대학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가 대대적으로 유행해서 'MBTI 하러 왔어요'하는 분들도 꽤나 됩니다. 또한, 진로를 설정할 때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로상담을 위해서도 상담센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까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 상담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 상담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상담센터를 개소하려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실제로 하루만에도 개소가 가능합니다. 즉,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어도 '자본'과 '홍보력'이 있는 사람이 개소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심리상담 관련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자격증이 수천 개이며,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 관련 범죄 경력이 있어도 제한 없이 개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담 법제화를 발판으로 상담사의 보수와 복지의 현실화를 통해 역량있고 열정있는 상담 실무자들이 현장에 계속 남아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20년간 일해오면서 봐온 현실은 상담자들이 석사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학비 외에도 상담 수련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2년 계약직, 심지어 더 단기적인 계약직에, 다른 직군에 비해서 월급이나 휴가가 연차에 따라 오르지 않고 낮은 비용을 받는 구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능력있고 열정적인 우리 동료들이 실제로 과연 이대로 실무자로 남아있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으로 외근하며 주말과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없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죈 노출, 외상 등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는 실무자에 대한 처우가 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 법제화를 통해 역량 갖춘 상담자들이 실무자로 오랫동안 남아 국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온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볼 상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첫째, 현재까지 배출되어 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70여년 동안 상담은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띄고 다양한 학문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가족학, 기독교학, 예술치료학 등 다양한 학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연령을 위한 언어 상담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매체 활용 상담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융합학문적으로 발전되어온 상담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학과나 특정 영역의 독점이 아닌, 현재까지 배출되어온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포함되면서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담은 이론뿐 아니라 실무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실무수련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 법제화가 되어 협회가 만들어지면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갱신 보수교육과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셋째,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사회가 점점 다문화,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자들이 다문화상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면 상담이 비대면 상담보다 주를 이루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화상상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메타버스 상담으로까지 상담의 분야가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고려한 인재를 양성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심리상담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믿을만한 상담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들의 마음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 2

심리상담이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도록

정진영

(국민일보 이슈 & 탐사팀 기자)

저희 팀은 지난 4월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밤중 유명한 심리상담센터로부터 ‘나랑 놀래?’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 센터가 내담자 개인정보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실수였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던 내담자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건 그리 특이한 경험은 아닌 듯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성적 트라우마를 해소해보려 찾아간 상담소에서 되레 트라우마를 키우고 나왔고, 어떤 내담자는 ‘당신이 매력이 넘쳐 그런 거’라며 성폭력이 발생한 이유를 내담자에게 돌리는 얘길 듣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담자가 힘들어하니까’ 라는 핑계로 술을 마시며 상담을 받게 한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를 되짚어보게 된 거죠.

앞선 발제에서도 보셨다시피 국민들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떠올리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하는 ‘가스라이팅’도 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터리’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에게 함부로 상담을 했을 때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일테고요.

그런데 이 심리상담 시장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중요성과 기대에 비해서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팀 기자가 해봤듯 ‘1급 상담사 자격증’은 2시간여만에 발급이 가능했고, 수요자와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 자격증을 올리자 2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단순한 고민 상담부터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성 문제까지 간단하게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양하게요. 일각에선 이런 허술함을 이용해 성범죄자들의 양형에 유리한 의견서를 써주겠다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도 이 ‘영터리’ 상담사를 제재할 수단과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상담사’ 혹은 ‘심리사’를 제외하곤 모든 자격이 민간자격이었으니까요. 그나마 공신력을 인정받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있지만, 양 학회 출신이 아닌 상담사가 비위를 저지르면 어떤 제재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양 학회 출신 상담사가 비위를 저지르고 자격을 박탈당해도 또 다른 심리상담센터를 차리는 게 가능합니다.

시장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한 내담자의 정신상태가 끝 모를 바닥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데도 '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고, 이제껏 상담사 개개인의 윤리에만 기댄 채 부디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왔다는 사실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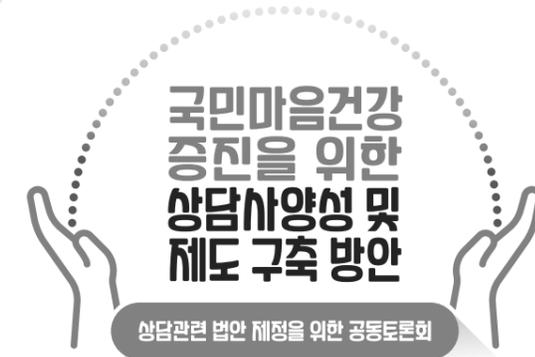
그나마 다행인 건 심리든 상담이든 심리상담이든, 이 영역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담사 혹은 심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허들을 둘 것인가, 석사인가 박사인가, 어느 과를 전공해야 하나 같은 것들이요.

법이 인정하는 자격을 만들어야 하니 이런 논의와 치열한 토론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수순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지요. 결국 입장을 좁혀야 할 부분은 빠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부분에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고픈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충점을 찾자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이 의견을 굽혀야만 끝날 것처럼요.

사실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보자면 '심리사'든 '상담사'든 '심리상담사'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제 내용 중 심리상담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과 재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찾는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심리상담의 역할을 잘 캐치해낸 것 같아서요.

저희 팀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이후 삶을 취재해 현재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취재하면서도 심리상담의 역할이 참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약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리상담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들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심리상담이 법제화되어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아줄이 돼주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누군가는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제화의 방향을 논할 때 이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전공을 해야 할 것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상담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를 중심에 두고 머리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면 자격의 명칭과 기준 등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의 기준을 정할 때 역시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더 나은 자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발제 1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제도 구축의 방향

김수임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김창대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혜경

(LG 전자 가산심리상담실장)

박현민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문주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난치질환통합치료 연구소 부소장,

원광대 한의전문대학원 한의예과 강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가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상담도입 초기에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저렴하지 않은 상담 비용, 신경정신과와 상담소를 동일하게 보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상담소를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상담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담센터와 상담자의 양적 팽창을 가속화하였고, 국가자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상담의 질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2) 양성된 전문가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 협회에서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하며, (3) 전문가 양성, 서비스 전달, 양성한 전문가에 대해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시장원리를 따르거나 일부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의 경우 전문학회나 협회에서 국민의 마음건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격 형태로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민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나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과 (2)를 포괄하는 (3)의 법적, 제도적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 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건강은 보다 위협을 받으며 누가 이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가 상담학 및 심리학계에 첨예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3월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심리상담사법안’과 전봉민 의원(국민의 힘)의 ‘마음건강증진법안’, 4월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의 ‘심리사법안’, 그리고 2022년 7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상담사법안’까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무분별한 심리상담 체계와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담사법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담사법안’은 상담이 다학제적 학문임을 고려하여 특정 학과 중심이 아닌 기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가능한 포괄해 나가는 논의를 기대한다.

둘째, ‘상담사법안’은 전문성의 핵심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통 교육과정(예를 들어, 상담이론, 집단상담, 상담실습, 성격과 정신건강, 진로상담, 가족상담, 인간발달 등¹⁾)을 학습하고 수련인증기관에서 실제 수련을 수행하는 제도화를 기대한다.

셋째, ‘상담사법안’은 1급과 2급으로 자격체계를 구분하고, 일반상담뿐 아니라 전문영역(예를 들어, 가족상담, 군상담, 기업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여성상담, 명상상담, 재활상담, 진로상담, 매체치료, 예술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담사법안’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상담사 양성 및 제도구축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고 교육과정 양성과정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존의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포괄적 방향의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상담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민간에서 담당하던 수련체계를 국가가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과목 인증평가, 수련기관 인증평가, 상담사협회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셋째, 상담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 지역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상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공통의 교과과 수련을 기반으로 한 자격증과 여기에 전문영역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구성해 갈 수 있는 자격 기본 구조를 구축해 갈 것을 제안한다.

1)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 상담심리학회 2급과정 기준 혹은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상담학과 관련 학부, 대학원 교육과정 참고

발제 2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이선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 심리서비스대학원 교수, (사)한국가족치료학회장)

우리 사회 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상담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공동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는 여러 상담학회 및 단체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구성원의 심리, 정서, 관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담심리서비스 제도화 과정의 최대 과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한국가족치료학회를 비롯한 가족상담전문학회 컨소시엄 학회들이 개진한 의견들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교육훈련자, 관리감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간 상호 이해와 조정 과정에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는 매우 광범위함.

- 여기서 ‘심리’ 상담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심리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치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 재정상담, 약물상담 등과 같이 상담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이라고 구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임.
- 예를 들어, 심리상담에는 정신건강의학(약물투여를 제외한 상담 및 치료영역, 임상심리 등 포함), 인간의 내면치료와 성장(개인상담의 영역), 부부가족을 포함한 관계적 측면의 치료와 성장(부부가족 상담의 영역) 등이 포함됨.
- 심리 및 상담서비스는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여러 형태가 존재함.

2. 상담관련 법안 통과 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문제는 가족 및 관계 이슈가 될 것임. 진단, 처방, 전문가 개입 기반의 개인 중심 서비스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큼.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및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심, 공동체(가족) 중심, 그리고 거시적 체계를 고려한 생태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정신역동, 체계론, 탈근대주의, 신경생물학, 매체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통해 현 사회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예, 아동, 청소년, 중년, 노인, 가족 등)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음.

3. 상담심리사의 전문적 서비스는 개인심리 및 병리적 관점의 진단, 처방, 심리개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여타 사회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특징이 있음.

-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는 아동, 청소년, 중년, 노인, 가족 등 영역에서 발생하는 발달적, 체계적(관계적) 이슈임.
- 개인 문제의 규정, 범주화(진단명) 행위 이외에 개인의 사회적 생태환경(학교, 직장 등) 속에서 실질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담심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공인력 다변화가 중요함.

4.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부부가족치료 분야는 연방 및 주 법령에 의해 관리 및 규제되는 주요 정신건강 분야 중 하나임.

-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에서는 5가지 핵심 정신건강관련 전문가에 부부가족상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
- 다음 <표>는 미국연방정부의 다양한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에 대한 내용임

<표> 미연방정부 법령에서 정의하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법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5 Core Mental Health Professions 1. Psychiatrists (정신과 의사) 2. Clinical Psychologists (임상심리학자) 3. Clinical Social workers (임상사회복지사) 4. Psychiatric nurse specialists (정신건강간호사) 5. Marriage & Family Therapists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국가 보건서비스단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국가 보건서비스단은 소외된 국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MFTs(부부가족상담전문가)를 "정신건강 전문가"로 정의
미 국방부 (The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는 MFTs(부부가족상담전문가)를 환자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health-care professionals(건강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정의
미 교육부 (The Department of Education)	미 교육부는 MFTs(부부가족상담전문가)를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게 조기 개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qualified providers(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정의

5. 현재 발의된 상담관련 법안의 내용에 있어 국내 현실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 수립이 필요함.

- 협의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학력조건: 석사이상)
 -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현실적인 수련시간 조정
 - 상담윤리 및 정책 관련 교육 강화
 - 응시조건에 '상담관련분야' 전공(예, 아동·가족학, 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청소년(지도)학·상담학 분야 등)을 학과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포함 (참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 제23조제3항)
-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국규모의 공신력 있는 상담 관련 학술단체를 인정하여야 함. 이때 해당 학술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상담관련 전문 학술단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단체로 제한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KCI) 학술지를 10년 이상 발간하고 있는 상담관련 학술단체
 -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제도를 20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상담관련 학술단체
 - 정기적인 임상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공신력 있는 상담관련 학술단체

6. 심리상담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녕, 국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경제적 위기, 생태환경적 도전, 전통 규범 해체, 다양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등장 등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인간의 내면과 관계에 대한 전문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절실함.
- 조속한 제도 수립 및 안정화는 국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사회서비스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발제 3

지금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국가자격특별위원장)

통계청에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50.5%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써 이를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현대인 중 약 절반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과정엔 여러 문제가 내포된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고 여러 신체적 질병을 일으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그만큼의 정신적인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으로 2021년에만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립감, 외로움, 분노, 불안, 우울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슬로건으로 떠올랐다. 현재 여러 매체나 책에서도 마음과 관련된 콘텐츠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신드롬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해가 지나며 현저한 증가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심리상담은 어떻게 관리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을 보면 100여 개의 법률에서 상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의는 많음에도 어떤 사람이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것인지, 더 나아가 이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체계는 불확실하다.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국가 자격이 있음에도 특정 대상이나 그룹에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수행에서도 독자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의 직군도 얼마든지 심리상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의사가 아닌데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 법률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민간 심리상담 시장이 메우고 있다. 문제는 제어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자격서비스에 등록된 ‘심리상담’ 자격이 3,400여 개에 육박한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격 기관은 단 몇 시간의 교육을 들으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대한민국의 심리상담센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어떤 이가 하루 만에 자격을 받고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률 장치가 부재하다. 이는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소만은 아니다. 직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의 부재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 건강 서비스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심리상담의 장 안에서 사기, 착취, 갈취,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이에 관련된 여러 뉴스 매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심리상담의 직무란 무엇일까? 이는 국가의 자격 기준과 범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에서의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살펴보면 심리상담은 대분류인 ‘사회복지·종교’의 중분류에 속하며 소분류엔 심리상담, 청소년 지도, 직업상담 서비스가 있다. 이 중 심리상담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NCS에서 심리상담 분야로 한정하면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가족 상담, 위기 상담, 심리상담 홍보 등 총 21개의 단위요소가 있다.

<심리상담의 21개의 능력 단위>	
1. 심리상담 안내	2. 접수 상담
3. 내담자 의뢰·연계	4. 개인 심리치료 상담
5. 집단상담	6. 관계자 상담
7. 위기 상담	8. 심리상담 교육
9. 심리검사 활용	10. 심리상담 정보관리
11. 심리상담 자문	12. 수련상담자 교육
13. 심리상담 슈퍼비전	14. 심리상담 사례 개념화
15. 재난극복 상담	16. 트라우마 심리치료
17. 부부·가족 상담	18. 비대면 심리상담
19.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20. 심리상담 기획·행정
21. 심리상담 홍보	

능력 단위를 하나씩 검토하다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NCS는 심리상담의 직무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심리상담이 가지는 정체성과 그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심리상담의 업무 및 자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네 개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심리상담 분야의 숙원이자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수행하는 인력의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수월성을 구축하는데 대화하고 타협하는 데 그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관 분야의 여러 직역의 실무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고유의 업무 및 경계, 더 나아가 체계화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안심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시대를 향해 있다.

발제 4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법인가?

유미숙
(숙명여대 명예교수/한국놀이치료학회 고문)

1. 심리상담 서비스 법의 필요성

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지는 부모인 A가 있다.
입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긴장을 경험하는 학생 B가 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C가 있다.
노인이 되면서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죽음이 두려운 D가 있다.
가족의 이별을 경험하고 잠을 못 이루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E가 있다.

A, B, C, D, E... 이런 분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 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 일을 맡아줄 전문가가 심리상담전문가이다.

이들이 인터넷을 뒤지다 난감해한다. 과연 누가 적임자인지 현재는 알기가 쉽지 않다. OO학회, OO협회, OO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설명을 홈페이지에서 발견해도 과연 어떤 자격증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정확히 알 수도 없다.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바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의 발급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는 보장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민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서비스 영역에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수렴되었다. 이제는 법안을 발의하고 심리상담사의 국가자격증의 취득 기준과 발급 절차 등, 구체적이고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며 필요한 훈련과 자격의 취득 및 유지관리 방안에도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즉, 무자격자에 의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여 수혜자인 국민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고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증 제도에서 고려할 사항들

심리상담의 영역은 이론이나 기법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고 어린이나 특수계층의 대상을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만으로 획일화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국가자격증과 특수단체 자격증의 이원화도 시장 논리로

인정하여야 한다. 즉, 국가자격증과 함께 특수 영역에서 더욱 전문화된 민간자격증을 겸비하게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여 놓아야 한다.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언어로 상담을 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놀이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전문영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아닌 어린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담하는 영역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은 최소한의 공통된 자격 기준으로 발급하고 그 외의 다른 자격증과 함께 소지할 것을 권장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상생 방안

새로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에 따라 기존 자격증을 발급하던 단체나 학회들과의 갈등이 야기되므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격증을 모두 무시하고 국가자격증을 하나로 묶으려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자격검정절차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 국가의 재원이 필요하다. 합리적 해결 방법으로 오랫동안 공신력이 있던 전문가 자격증의 전환을 위한 절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기준보다 상회한 기준으로 발급된 자격증의 인정이 필요하다. 심리상담 관련 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취득 절차와 자격검증과정과 수련 조건을 비교하여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처럼 최소의 교육으로 대체해 주는 한시적인 경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한시적인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민간자격증 발급단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가의 재정을 절감하는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발제 5 상담관련 법안 제정 지지 성명

김미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된 상담관련 법안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상담관련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국민들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돕는 상담사에 대한 법률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음건강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상담사는 국민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관련 법률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담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이상에서 상담관련 전공의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엄격한 민간 자격증 과정을 마련하여 상담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 너무도 다양한 종류의 상담관련 자격증이 등장하였고, 이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적 상담사를 찾는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상담을 의뢰할 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사의 양성을 위해 상담관련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상담사는 특히 마음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사의 양성은 단기간의 필기시험 준비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상담관련 법안은 법안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문 상담사의 자격을 대학 이상에서 수학하게 하고, 상당 시간의 수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사 양성을 위한 과정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속 학과들은 대학에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상담사 양성을 위해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 상담사의 인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서 상담학 전공을 통해 인성과 학문적 소양을 닦고 현장 실습을 병행한 후, 상담관련 법안에 따라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지지하며, 이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문적

인 과정이 될 것이다.

상담관련 법안의 제정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문가에 의한 비대면 상담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널리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제안된 상담관련 법안이 상호 적절한 조율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상담관련 법안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2022년 10월 20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김미례

발제 6

상담관련 법안 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한국상담학회 부회장)

‘법은 무고한(죄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은 몇해 전 상영된 영화 ‘배심원들’에 나오는 대사이다. 상담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모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뜻을 상담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관련 법안은 단순히 상담자들의 이익이나, 권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안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과 민간자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또다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담자들은 법의 울타리가 아닌 윤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상담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읽어주는(Good Will Hunting) 사람들로써, 법없어도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본인들이 법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자 노력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들을 도와주려 애써왔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역할 경계의 모호함 등등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왔고, 좀더 힘든 상황이 되면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안들을 풀어갔다. 윤리강령의 기저에 놓인 내담자 복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들의 꼬인 매듭을 풀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윤리가 아닌 법의 영역에서 이를 풀어나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회에 제소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윤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모두 학회가 승소를 하였지만, 관련 법안이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담자 복지라는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상담자들의 권익도 훼손될 수 있다. 상담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애쓰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자격증의 난립과, 현란한 홍보 등으로 인해서 내담자들은 누가 제대로 된 자격증자인지, 누가 자신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상담관련 법안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한 전문화된 서비스의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과반에 육박하였고, 우울, 불안 등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는 25%가 되

지 않았으며, 민간기관의 이용률이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는 직접 검색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높지만, 아직 이용률은 낮으며,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한 것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편(52.8%)이고, 89.5%가 심리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도 82.2%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마음건강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제대로된 전문적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도는 높아져 있으나, 그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판별하지 못하여 또다른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 법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한다. 잠재적인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 모두 ‘누가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담관련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가능하다. 이제는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상담관련 법안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담관련 법안은 상담자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내담자 즉, 전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상담자 모두의 소망임과 동시에 전국민 모두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 학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발제 7

국민 마음 건강 증진과 윤리적 심리상담 서비스

황임란

(순천향대학교 상담및임상심리학과 대우교수/ 한국상담학회 윤리위원장)

1.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서비스에서의 윤리적 책무성의 문제

심리상담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전문적 작업이다. 사람을 상담하고 심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기본 주제는 심리상담 서비스 관계에서 전문상담자의 역할이다. 다양한 내담자와 심리상담 전문가의 심층적인 관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다. 윤리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내담자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그렇지 못한 비윤리적인 상담서비스에 노출된 내담자는 내현적이거나 외현적인 행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도 하고 나아가 그 손상의 부정적인 영향의 장기화로 건강한 삶의 회복과 유지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종 전문가 공동체를 넘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유발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들의 윤리적인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치의 중요한 전제가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격인증 제도 및 자격 갱신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문상담사들의 전문 활동에 윤리적인 측면을 보충하면서도 그 윤리성에의 경계심과 예민성을 촉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들은 내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판단력을 활용해야 할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2. 심리상담 서비스에서의 법과 윤리의 가치

전문가 윤리와 법은 모두 그 핵심에 일련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법의 가치들은 사회가 동의하는 것들이고 전문가 윤리의 가치들은 해당 구성원들이 승인한 가치이다. 전문가 윤리는 전문가들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를 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취해야할 행동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실행한다. 또한 윤리강령에는 특정직업의 윤리적인 이상과 중심적인 가치가 진술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법제화 되지 않은 현행의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의 현장 실태를 점검해 보면 그 개별적인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자들이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경험을 겪는 부정적 결과 실태가 점차 증가 양상을 띠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선진국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자격의 법제화를 모델링하여 국민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윤리성과 그 자격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법의 기초를 발판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높은 곳을 향함으로써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와 대중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발제 8

전 국민이 안심하고 적기에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김영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에서 심리상담은 이미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500여개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3년 이상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거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배출된 전문가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심리상담실 및 진로진학상담실,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와 경력개발센터,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까지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고용지원센터, 군대와 기업체 및 종교단체, 특수한 요구를 가진 국민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독예방센터, 개별화된 상담을 지원하는 개인상담센터와 집단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온라인상담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전 연령대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 입장에서,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장벽이 낮을수록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보다 쉽게 빨리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가 국민들의 근거리에서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기관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상담전문가 양성과정과 직무능력의 관계, 직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차별성, 사회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심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 직업상담의 직무분류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사이 심리상담의 전문성은 놀랍게 발전하였다. 상담연구 분야에서는 내담자 이해를 위한 특성 연구와 환경 연구,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주제별 연구, 상담과정 연구, 상담성과 연구, 상담자 특성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연구 등이 축적되었다.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내담자 특성과 상담주제에 따라 아동청소년, 학교, 대학, 집단, 진로,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 등 14개 분과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담 전문가들은 한 번의 양성과정과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상담 실무에 종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과 수퍼비전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특성과 호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로, 학술적으로나 상담현장의 경험 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미 지역사회와 기관에서 내담자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에게 근거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성에 대한 공식적 확인이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상담전문가라고 홍보하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담자의 문제가 악화되거나 비윤리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심

리상담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어디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상담자는 전문성이 검증된 신뢰할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심리상담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검증과 인정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공되어 왔던 심리상담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전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상담의 범위와 상담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대로 수련받고 윤리적이며 전문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상담자와 상담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심리상담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적기에 필요한 심리상담지원을 받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발제 9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성의 본질

고홍월

(충남대학교 교수/충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한국상담학회 편집위원장)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직화 방안을 두고 법제화라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자격 수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질 관리는 매우 바람직하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이 글은 관련 분야에서 오래 동안 축적한 연구결과 중심으로 학술적 근거를 찾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을 둘러싼 핵심 질문

많은 전문가들이 재차 강조하는 것과 같이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의 핵심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직화이다. 이 점은 전 국민, 관련 분야 전문가, 수련생 등 모두가 원하는 바이다. 이러한 핵심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이자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문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 둘째, 특정 학과가 전문성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 셋째,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중에 특정 학과 졸업자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것인가?

사실 심리상담이 상당히 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한편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논쟁의 맥락과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질문에 관한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심리상담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 매우 깊은 역사적 과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이 배경 학문인 것은 사실이며, 교육학, 아동학, 가족학, 상담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학문적 성과 또한 지금까지 심리상담 분야를 함께 발전시켜왔다(김계현, 1995;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이러한 배경, 역사적 과정 및 학문적 성과를 상호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이 특정 학과, 특정 전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상담 효과를 산출하는 근본적 요소

또한 심리상담의 효과 산출 변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너무 많은 증거들이 심리상담의 효과 산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Wampold와 Ime(2015)의 공통요인 모델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심리상담에서 치료적 효과를 산출하는 활성 성분으로 첫째는 특정 처치 기법의 적용이며, 둘째는 모든 처치에 존재하는 공통요인의 효과이다(김동민, 2021). 즉, 심리상담의 효과를 산출하는 변인은 특정 지식과 그 지식을 적용하는 상담 인력의 역량이라는 점이 상담학계의 공동적인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상담 효과의 산출 근거를 인정하는 집단에서 심리상담에서 적용하는 지식과 전담 인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이 상담 효과를 산출하는 근거를 왜곡시킬 수 있는가?
-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이 소수 집단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인가?
- 국내 상담 현장 전담 인력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이상 질문과 관련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이나 행위 자체가 법제화 쟁점의 본질을 암시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권위적인 연구자의 연구(김동민, 2021; Wampold와 Ime, 20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3. 심리상담 전문인력 배출 현황

과연 현장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심리상담 전공 교육의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제 기여하고 있는 전문 집단의 노력을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은 국가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며, 실제 심리상담 분야의 인력 양성, 주요 연구 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의 역사적 과정과 전문성 수준을 보면 논쟁의 초점은 매우 단순해질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제도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는 전문영역을 보면, 심리상담 서비스(40.9%)의 인지 정도가 심리 서비스(23.6%)나 의료 서비스(17.2%)의 인지 정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근 외, 2022).

심리상담 전공 분야의 대학 및 학과, 핵심 교과목은 물론 실제 사회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나 전문인력 등 관련 현황(김민향, 김동민, 2015; 김인규, 손요한, 2020) 또한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 ‘마음 건강’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심리학과 이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나 전공, 대학원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전통적인 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나 다른 교육편제를 무조건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소수의 사례를 통해 일반화시켜 전체를 부정하는 형태는 매우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5). **적용영역별 접근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동민 (2021). 무엇이 상담 효과를 산출하는가?: 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의 함의. **상담학연구** 22(5), 59-75.
- 김민향, 김동민 (2015).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Wee 클래스 상담자의 인식 분석. **상담학연구** 16(6), 447-163.
- 김영근, 라수현, 최동현, 송현구 (2022). 심리상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제 2차 협의체 상담학회 연구보고서**.
- 김인규, 손요한 (2020).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69-77.
- 이장호, 정남윤,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Wampold, B. E., & Imel, Z. E. (2015).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The evidence for what makes psychotherapy work*. New York, NY: Routledge.

발제 10**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학술적 고찰**

고흥월

(충남대학교 교수/충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한국상담학회 편집위원장)

이주영

(단국대학교 교수/한국상담학회 부편집위원장)

심리상담 서비스를 법률로 제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있었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제화 작업을 경험하였고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하규영, 허난설, 이지향 외, 2020; 신윤정, 이지연, 2021).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갑론을박 하는 중이다. 법제화를 위해 이와 같은 건설적인 논쟁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법제화는 전국민의 마음건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 학문적 근거가 뒷받침 되는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마음 건강'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 발의 전후로 많은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관련 학술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심리상담 법안의 모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나아갈 법제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심리상담 법제화의 필요성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제화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인규(2022)는 2022년 3월에 국회에서 2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전문상담 분야 NCS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실정,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상담인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전문 집단에 진입한 점, 심리상담 관련 학회 민간자격의 국가 자격화 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담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상담학계의 논의들은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김인규, 2022)의 견해를 보면 그동안 일반 상담전문가들만 개인적인 관심과 사명의식으로 상담 법제화와 관심을 기울였던 경향이어서 국한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면 향후에는 상담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관련 교과목 운영이나 관련 정책을 학회가 주도해서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가야함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담 분야의 현황을 보면 실제 전문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단체가 있고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문직 요건을 충족시

키고 있지만, 법률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 인준제도가 없는 것은 전문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서영석, 안하얀, 2022)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인준과 국가 수준의 자격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상담 전문직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상담전문직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자들은 심리상담 모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심리상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가를 산정하거나 서비스 비용의 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안정한 부분(성현모, 이상민, 2021a)이 존재하며, 대학평가제도에서도 전문상담원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상담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상담 기관에 전문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인금 비용 산정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김희수, 2021). 이는 실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불이익 혹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한 판단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것처럼 심리상담 모법 제정이 시급하고, 다양한 형태로 모법의 방향성 및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2.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 내용에 대한 제안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전체의 방향을 제안하거나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심리상담 관련 모법에서 자격명을 '심리상담'으로 명시하는 것, 민간 자격증과의 구분 위해 '국가공인' 등의 용어를 붙여 자격명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며, 기존 국가자격증을 포괄하고 수렴하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최정아, 2021). 또한 심리상담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심리상담 관련 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법안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였다(성현모, 이상민, 2021b). 이들의 주장은 법안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심리상담의 정의, 역할, 자격기준, 경과기준 등 법안 내용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역을 선택하여 발의된 법안들 간 비교나 국외 사례 비교를 통해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발의된 법안들 간의 비교를 통해 법안에 심리상담의 정의 및 심리상담사의 업무가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대학원 미만의 학

력자에게도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각 학위 수준별 실습과 수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결격사유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는 것, 현존하는 상담 전문 인력을 포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성현모, 이상민, 2022). 실습과 수련의 기준에 대해서는 실습은 대학 교육과정과 관련되므로 합의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수련은 상대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련부터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혹은 전문상담사와 상담심리사 2급에 준하는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1년의 도제식 실무수련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경과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발의된 각 법안의 비용추계와 공공 및 민간의 심리상담 시장 규모, 대만과 일본의 경과조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바가 있는데, 법안에 따라 경과조치에 의해 구제받는 심리상담사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나 그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 심리사법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공공 및 민간의 심리상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성현모, 안성희, 김보람, 이상민, 2022).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탐색의 내용과 범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법안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상담심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심리상담 시장의 현실 모두를 고려하는 접근은 동일하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 법안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함께 양적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해외 법, 제도의 시사점

연구자들은 해외의 법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심리상담 서비스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에 대해 명시할 때, 최종학력의 전공이 심리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전공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 이 전공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 최종 학위 후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것, 최종학력이 석사급인 것을 제도화하는 등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신윤정, 이지연, 2021). 또한, 전문적이고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학위 과정 내에서 어떤 수련을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수련의 최소기준은 엄격히 하더라도 전문성을 심화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유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협력하여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 역시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라고 하였다(신윤정, 이지연, 2021). 미국의 전문상담사(LCP) 제도에서처럼 자격을 취득한 자만 민간 사설 심리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제도 확립 시 자격제도 법제화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에서는 특정 학과나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심리상담의 다학제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의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심리상담 직역(職役)의 본질을 고려한 프로그램 확립을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교과목과 수련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심리상담 직역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연구들에서는 국외 사례를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시스템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의 상황과 달리 이미 민간 자격증이 수천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몇몇 학회 자격증들은 이미 수요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환경 및 해당 전문 분야 안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기존 주요 심리상담 관련 학회 자격증들이 석·박사를 구분 짓기보다는 주로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미국의 심리사(LP)에 준하는 1급 전문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신윤정, 이지연, 2021). 우리나라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민간 관리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하도록 자격제도가 관리·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대학(원)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NCS의 학습모듈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단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이 연구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는 영역과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다른 점이 있었으나 국외의 법과 제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법안 마련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 심리상담 법을 마련하거나 제도를 체계화시킨 국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절대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맞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법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초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수요 및 기존 현황, 사회문화적 특수성 등을 아우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상담 분야 내의 다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김인규(2022).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1-18.
 김희수(2021). 상담기관 대학평가제도와 상담 법제화 추진 방향의 쟁점. **상담학연구**, 22(5), 1-10.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

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서영석, 안하얀(2022). 상담의 전문직화: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1-15.
 성현모, 안성희, 김보람, 이상민(2022). 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현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상담학연구**, 23(4), 13-29.
 성현모, 이상민(2022).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14(1), 195-219.
 성현모, 이상민(2021a).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7-27.
 성현모, 이상민(2021b).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담학연구**, 22(4), 1-10.
 성현모, 이상민(2022).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19-38
 성현모, 이상희, 이은수, 박종성, 이상민(2022).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 명칭 탐색. **교육치료연구** 14(2), 141-158.
 신윤정, 이지연(2021). 심리상담 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2022).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 **상담학연구**, 23(3), 39-49.
 최정아(2021).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11-27.
 하규영, 허난설, 이지향, 이상민(2020).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32(2), 997-1017.

발제 11

토론회 발표문

허난설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한국상담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일반적인 직업(occupation)과 전문적 직업(profession)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Gardner, Csikszentmihalyi, & Damon(2001)는 Good work 프로젝트를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전문성(Technical aspect,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윤리적 측면에서의 전문성(Professional ethics)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투쟁을 해온 미국 학계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문적 직업이라는 근거로 1) 특화된 훈련과정, 2) 윤리적 지침, 3) 직업군이 하나의 분야로써 가지는 강한 직업적 정체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Wilensky, 1964; Brown & Pate, 1983; Feit & Lloyd, 1990).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는 요구되는 과제를 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화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전문가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하며, 직업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도와 기관을 통한 전문적 역량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교육과정과 수련 과정에 대한 지침, 교육과정과 수련을 마친 자 중 적격자를 선별해 내는 과정에 대한 지침), 직업윤리 지침을 기반으로 이를 위반시 제도적 규제(자격이나 면허의 수여와 박탈에 대한 지침)가 가능해야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군이 하나의 분야로써 가지는 강한 직업적 정체성이 전문성을 분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직업적 정체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들이 있다면, 각 커뮤니티들의 핵심적 전문역량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 제정하고자 하는 법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이처럼 법제화의 근본적 목표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인증하고, 이들이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제정하고자 하는 법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1개의 법 또는 2개 이상의 법이 제정될 것이라면 각 법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정될 법이 심리상담 서비스법이라면, 해당 법에서 규정된 심리상담 전문가가 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심리상담 전문가가 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내담자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가 가능하고, 내

담자를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 완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개입을 실행>라고 규정해 보시다. 제정된 법은 이 핵심 과제를 수행 가능케 하는 훈련 과정을 정의하고, 동시에 해당 과제 수행 역량을 평가할 방법을 정의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심리상담 커뮤니티들은 제정될 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외현적 범주가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컨대, 심리학적 지식을 근거로 관련 연구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서비스, 심리상담에 대한 지식 없이 발달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아동 훈육과 의사소통에 대한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 등등은 논의 중인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등의 의문입니다. 이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법이 제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해당 법의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정될 법이 핵심 역량이 다른 여러 전문성을 통합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 핵심 역량의 포커스가 다르게 훈련되어 온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할 것인지는 논점이 될 것입니다. 법제화와 관련된 많은 논란 중 일부는 여러 전문성을 통합할 것으로 보이는 모법 제정 이후, 자격의 세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3) 훈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정의 근거는 심리상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과목과 실무 훈련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들은 심리학이라는 포괄적 학문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될 것이나, 중요한 논점은 심리학의 스펙트럼 내에서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목이 무엇인지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겠으나 심리상담 서비스의 지식적 근거는 심리상담을 위해 발전되어온 응용과학으로서의 상담학의 주요 교과목들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위해 특화된 훈련 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는 강의 뿐 아니라 슈퍼비전과 함께 한 개인상담 경험이 어느 수준 이상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업에서 배우긴 하였지만, 실제 기관에서의 개인상담 실습경험이 없거나, 실습 중 어느 수준 이상의 개인상담 회기 진행과 그에 대한 슈퍼비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개인상담을 주 서비스로 하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독립적 개인상담 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원론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제화와 관련된 담론들 속에서 원론에 대한 혼란이 생기셨을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위해 쓴 글을 공유합니다. 심리상담 법제화가 서로 다른 전문가 커뮤니티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폄하하기 보다는, 서로의 핵심 전문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Brown, J. A., & Pate, R. H. (1983). *Being a counselor: Directions and challeng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Feit, S. S., & Lloyd, A. P. (1990). A Profession in Search of Professional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9(4), 216-19.

Gardner, H., Csikszentmihalyi, M., & Damon, W. (2001). *Good 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 Basic Books (AZ).

Wilensky, H. L. (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37-158.

발제 12

심리상담법 제정과 학교상담 현장 활성화

조남정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상담학회 상담정책위원장)

-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상담분야의 국가자격이 있어 왔지만 각기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살피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민간에서도 다양한 심리상담자격증을 운영하였지만 질적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심리상담법 제정을 통한 국민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은 환영하고 적극 지지를 할 일일 것이다.
- 국가서비스 중 심리상담법의 제정은 상담관련 모법 성격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과정 운영 뿐 아니라 학교상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그동안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년 학교상담진흥법,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고, 황준성 등(2011), 임은미 등(2016), 장덕호 등(2019)이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법률안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05년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상담교사순회교사를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이후 2012년 교육부 훈령으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김소아, 이강주, 최정호, 김인규, 신효정, 조남정, 2020)
- 전문상담교사는 2020년 초등학교 866명, 중학교 1,676명, 고등학교 1,229명 총 3,850명이 현장에 배치되었다(김소아, 김인규, 2021).
- 그러나 여전히 전문상담교사제도에는 여러 개선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상담의 법적 근거 미비하고, 학교상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미흡하다.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Wee 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보건법,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학교상담이 운영되고 있어 학교상담현장의 혼란 초래되고 있다(황준성 등, 2010).
- 또한 학교상담업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인해 '전문상담교사 직무와 역할의 모호함 및 비밀보장의 어려움', '민감한 사안처리의 어

려움’, ‘Wee클래스 운영의 어려움’등을 경험하고 있다(제영수, 조항, 2020).

- 전문상담교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더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게 된다. 학교상담법(안)에서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교상담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는 ‘Wee 클래스 운영 매뉴얼’, ‘Wee 센터 운영 매뉴얼’, ‘학교상담종합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학교상담현장에 보급해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김소아, 김인규, 2021) .
- 현재 학교상담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에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사로서,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면 학교상담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을 볼 때 심리상담의 모법이 제정되면 학교상담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교상담법제정이 이뤄지면 위에서 언급된 학교상담의 현장에서 혼란, 갈등, 어려움들이 줄어들고 학교현장의 심리상담서비스도 체계화, 활성화 될 것이다. 심리상담법의 제정은 학교상담 체계화,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소아, 김인규 (2021). 학교상담법제화 과정과 이슈. 한국교육개발원.
 김소아, 이강주, 최정호, 김인규, 신효정, 조남정 (2020).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철우의원 발의 (2019. 05. 24.). 학교상담진흥법안, 190237.
 임은미, 이상민, 조남정, 진명식, 이수정 (2016). 전문상담교사 직무매뉴얼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장덕호, 김성기, 이덕난, 김혜정, 전하람, 김효선, 배희분 (2019).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제영수, 조항 (2020).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법제도 관련 요구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1(1), 49-67.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발제 13

상담 법제화와 관련된 대학생·대학원생의 목소리

강연미

(한국상담학회 학생위원회장)

- 한국상담학회는 상담관련 학과(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학술활동, 홍보 활동 및 연대를 지원하고 차세대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학생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3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음. 학생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월 1회 온라인미팅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소그룹 토의, 상담 분야 선배와의 만남, 연차학술대회 참여, 관련정보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다음은 소그룹 토의 중 상담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임

■ 심리상담 법제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김** : 난립하는 민간 자격증 들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담자가 받게 된다. 성범죄를 일으킨 자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므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임** : 학과 기초 교육에서 상담 법제화와 관련한 다큐를 보고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 : 상담학과에 재학하면서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기도 했고, 아직 확립되지 않은 법과 자격 문제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불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한** : SNS, 미디어, 대중매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관심에 비해 상담자들의 책임감이나 국가적 관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담사라는 직업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며 전문적인 직업이지만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책임감과 관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의 위치와 상담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많은 관심이 생겼다.

강** : 유학에 관심이 있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의 심리상담 분야는 국가적 자격관리가 미흡하다.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될 것이라 생각했다.

■ 심리상담 법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경험, 정보, 기회가 필요한가?

임** : 관심이 있는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과차원이나 학회에서 상담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법제화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 :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한** : 앞으로 상담계 활동에 뛰어들 사람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법제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그 의견들을 상담학회에 보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김** : 지난 번에 한국상담학회에서 심리상담 법제회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학회원들이었다. 심리상담 법제화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에 널리 알리려면 유튜브 생방송 등 비학회원들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앞으로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된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으면 그런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강** : 예컨대, 학부생의 입장에서 사회복지학과와 같이 학부생 졸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화 된 자격증과 커리큘럼이 있다면 학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다.

■ 학회나 학생위원회에서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임** : 학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법제화와 관련한 특강을 주기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현재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에 '학생'들의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가장 뿌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와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

서** : 상담을 전공하고 있거나 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상담 분야의 권위자를 초빙해서 이슈와 전문성, 몰입도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 앞서 2번에 말한 의견처럼 법제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의와 토론을 한 후 그 의견들을 정리해 현재 상담학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을 통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보낼 수 있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에게 현재의 상황과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더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 : 최근 양당에서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학회 및 **학회는 심리사법을 내놓고, 피켓시위, 국회의원사당 시위 등을 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을 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 측에서도 피켓시위 등을 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 좋겠다.

강** : 심리상담 법제화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부생 대상으로 존재하면 좋을 것 같다.

발제 14

국민 행복의 파수꾼이 될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김장희

(경상국립대 교수/ 한국대학상담학회장)

한국대학상담학회 3천명의 회원들은 우리 국민의 마음 건강을 수호할 심리상담사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기를 염원합니다. 심리상담사법은 우리 국민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대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최근 조사(보건복지부 2021)에서 코로나 19 이후, 이전(2019년)과 비교하여 우울 위험군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생의 정신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줍니다. 대학생의 우울은 대학생 시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인터넷 중독, 도박, 자해와 자살 등의 위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2.1%로 10명중 1명 꼴에 그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1). 적지 않은 학생들이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각종 조사에서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족을 주된 이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무엇이고 다른 유사 영역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세나 사주팔자, 타로점 등 수많은 유사 영역이 난무하고 있고 심리상담을 표방하면서도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깊은 고민이나 아픔 등이 있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시행된다면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은 안전하게 접근해도 되는 영역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즉,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상담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 상담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심리상담 법제화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학 상담기관이 채용하는 상담전문가의 기본 요건이 법제화 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게 되고, 이는 대학 상담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이용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리상담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 행복을 위한 심리상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염원합니다. 심리상담 법제화는 국민 행복을 수호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할것입니다.

발제 15 심리상담 법제화를 바란다

최승애
(최승애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중독상담학회장)

상담관련 법안 제정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정부에서 전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업무와 관련한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했을 때,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에 가슴이 벅찼다.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이 제정되면,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비전문가나 부적격 기관으로부터 무익하거나 위험한 서비스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고 안녕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법제화 과정에서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국가의 정신건강 영역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근거 기반 과학적 상담을 제공할 전문적 상담인력 양성과 상담전문직의 정체성에 따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놓은 것으로 사려된다.

심리상담에 대한 명시적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격명, 직무, 응시자격 요건 등 입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기 어렵고, 심리상담법이라는 상위법 없이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군대, 학교, 직장 등 기관의 상담관련 법률 등 심리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제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 상담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사실 이면에는 무분별한 상담 자격의 난립이 빚은 비전문적 상담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인권 피해도 자주 보고되어 국민에게 심리상담의 치료적 효과와 안전한 접근에 대한 혼란에 보호와 규제를 제공할 필요가 매우 크다. 또한 각종 법률에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할 때조차 그 실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여 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상담학회는 2016년에 결국 폐기된 약칭 4대 중독법, 인터넷 중독법, 게임중독법 또는 중독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안이 상정되었을 때, 중독의 정의와 중독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이론과 실제, 중독문제에서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과 훈련과정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좀 더 최근에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심리상담적 접근의 치료적 효과와 광범위한 인권보호의 필요성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현장에서 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관련 인력과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와 보장을 받는 반면, 심리상담 분야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기에 공론에 참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혀왔다.

여러 직역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과 마찰은 예견될 수 있는 사태이지만, 비의료적 전국민정신건강과 내담자 안녕과 행복추구를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발제 16 심리상담 법제화를 바란다

안희정
(안희정심리상담연구소/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장)

저는 1984년에 홍익대학교 교육학과를 입학하고 1991년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상담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상담 실습할 수 있는 곳도 적었고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이 없어 상담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행히 1993년도에 청소년대화의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곳은 상담을 전공한 석박사들 50여명으로 구성된 상담정책 기관이었습니다. 이 곳에 입사를 하게 되어 상담가로서의 첫 발을 잘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각 시도 시군구에 생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들의 꾸준한 활동과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각 부처 산하에 상담기구들인 위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국방부의 병영생활상담관 등이 생겼고,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상담 자격증은 국가 자격인 청소년상담사를 제외하고는 학회자격과 민간자격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 심리건강과 정신건강을 선도하고 있는 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여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들을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존 상담관련 학회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리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다는 공익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국가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상담자격을 설계하고, 상담교육과 수련을 철저히 실시해서 상담자격과 상담사 양성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돈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 시대입니다. 상담이 사회 깊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개인과 가족 다양한 집단들의 마음건강과 웰빙, 교육, 직업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임파워하는 전문적인 관계(ACA, 2010)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의 심리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법제화를 해야 할 분명한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해타산이 서로 얽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의논하고 합의하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시대적 사명인 심리상담 법제화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2022년 10월 20일

발제 17
국민의 마음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 제정 지지
이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조교수/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총무이사)

마음건강 문제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반갑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의 어려움, 실업, 사업 부진 등 고용 문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개인화된 사회, 가족 관계 및 학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악화는 마음건강을 저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감염병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청년 실업 및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계층 간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전국민이 ‘모두가 같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OVID-19 이후 한국은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발병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매우 취약한 국가인 것으로 보고된 상황에서(출처; OECD, 2021), 국가가 국민의 전문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마음건강 투자 노력은 2015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치료비용 뿐만 아니라 생산성손실액 포함하여 약 11조로 추정되고, 마음건강(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투자가 1\$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15\$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McDaid, 2017), 마음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국민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상담학회 분과 생애개발상담학회도 온 국민이 전생애적인 발달과정에서 마음건강 문제를 잘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대표하는 정신건강 선진국이 되는 그 날까지, 정부의 마음건강 투자의 길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발제 18
대학 내 상담전공 운영방안 제언
신윤정
(한국서울경기인천상담학회)

2021년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이 수립된 이래로 심리건강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본 요건 및 평가와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네 개의 법안들은 비의료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인력의 자격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상담 관련 지식과 상담 실습경험을 비롯하여 상담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문지기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현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의 상담 전공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째, 학부는 과목 중심, 대학원은 학과 중심 표준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에도 이미 비의료 분야의 심리상담전문가들이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비의료 분야 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자격(certification) 부여 정도가 아니라 면허(licensure)를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과 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석사과정의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리상담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부 때 현재 소속된 학과 불문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들을 많이 듣도록 장려하고, 특히 학부 수준에 들어야 하는 핵심 교과목들을 안내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현장 실습 및 관련 연구 경험은 대학원 석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는 학과 중심, 정확하게는 학과 내 프로그램, 즉 세부 전공 중심 교육이 수퍼비전 수업 운영 및 논문 지도 등의 측면에서 학생 질 관리 및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대학원에서 학과 중심의 표준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정 학제나 학과 독점이 아닌, 프로그램(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관련 교육 제공 가능 전공) 중심으로 인정을 받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한국외대 이지연 교수와 함께 상담학연

구 특별호를 통해 발표한 논문(신윤정, 이지연, 2022)에서 미국에 개설된 대학원, 그 중에서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인증을 받은 상담심리 전공 박사 프로그램이 2020년 기준 80개이고, 그 중 53개의 프로그램이 교육학과 및 사범대에 속해 있었고 그 외에도 건강과학대학, 상담학과, 심리학과, 인문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에 나누어 개설되어 있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상담심리전공 프로그램도 개별 학교마다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내 조직이 다양하고 한 학교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학원 내 상담 관련 전공 과정 졸업자만이 향후 미국 심리상담 전문가 면허 취득 필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이 교육학과, 교양대학 혹은 심리학과 등 어떤 학부/학과 소속이든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따라 인증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 즉 그 세부 전공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즉 그 학과 소속 대학원생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향후에도 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년별 혹은 수료 사정 시 반드시 학생 별 개별 학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이 특정 과목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보수교육 등을 제공하고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표준교육 과정 구성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별 수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논문 자격시험과 같이 상담 내 특정 분야별 지식을 확인하는 지필고사 형식 외에, 실습 수련을 받는다면 내담자 기록 관리를 엄격히 하는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수련 과정에서 필요시 문제를 숨기기보다 적절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자기 돌봄을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의 평소 수업 내외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찰된 내용 등을 토대로 공통 기초 필수 소양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기초 필수 소양과 태도는 단기간의 시험이나 면접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상담사의 경우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가 심각하게 결핍시, 내담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심리상담 전공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일차적인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발제 19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

황미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기획위원장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양성 및 제도 구축방안으로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기회에 심리상담과 관련한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국회에 심리상담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법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상담사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자격규정에서 전공자에 대한 규정에서 서정숙 의원의 법안은 나머지 세 법안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 법안은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혹은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특정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윤과 전봉민 의원 법안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혹은 심상정 의원 법안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목”으로 규정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문구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서정숙 의원의 법안은 심리학 전공자(학사, 석사, 박사)에게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윤, 전봉민, 심상정 의원법안에서는 심리학 외에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학과 상담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제를 포함할 가능성을 “상담학 및 심리학 등”이란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목”이란 문구는 심리상담의 전달자가 특정 “학과”가 아니라 상담과 심리에 관련한 “과목”이란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 혹은 전문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서정숙 의원의 법안은 나머지 세 법안과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형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상담과 관련된 학문적 입장에서 서정숙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에 반대하고, 최종윤, 전봉민, 심상정 의원의 법안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상담심리와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 측면에서 본다면, 상담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1998)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

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의 정의를 위와 같이 변경한 데에는,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육체나 정신만이 아니라 영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차원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 인구에 대한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중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46%로 나타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종교를 믿고 있다면,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종교-영성적인 측면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사실 그들의 영성적 차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영성적 혹은 초월적 차원의 안녕과 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특정 종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영성훈련(그리스도교의 기도훈련, 영신수련 등) 혹은 마음수련(불교의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등이 심리상담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상담전문가로서의 훈련과정 중에 종교-영성적인 내담자들 혹은 종교와 영성 혹은 초월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들이 종교-영성적 주제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자들은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다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담자들은 과학적 학문에서 밝혀낸 생물학적 인간이해와 더불어 종교 영성적 혹은 초월과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해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심리학회(APA)에서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종교와 영성에 대한 분과학회(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division 36)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에 종교영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A에서는 2개의 학술지(division 36 Journal: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영성과 관련된 대학교재와 참고서도 이미 63권이나 출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심리학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물며 그 외에 학회들을 통해 출판되는 논문과 저서들은 이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다문화상담 영역과 긍정심리학에서도 ‘용서, 감사, 봉사,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의 초월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상담심리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심리학계를 중심으로 마음챙김(mindfulness) 혹은 명상(medit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스트레스 감소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종교-영성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상 종교-영성적 접근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론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내담자를 위해 ‘우울한 생각, 감정 및 행동’ 사이 연결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훈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때 ‘간단한 호흡, 명상, 요가’ 등과 같이 종교 영성적인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내담자의 영성적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종교와 영성의 주제들은 이미 중요한 전문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미국심리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1999년 미국 다문화 최고회의(National Multicultural Conference and Summit)에서는 “영성은 인간 존재에 관한 심리학의 필요조건이며, 인간은 문화적, 영성적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Plant, Sue, Bingham, Porche-Burke, & Vasquez, 1999, p.1065).

이렇게 심리상담에서 종교와 영성적인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심리학회(APA, 2002)는 ‘심리학자들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하여 상담자들에게 상담중에 종교적 다양성을 포함한 내담자들의 다양성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담자들은 종교영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종교-영성적인 주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상담과 관련된 교육과 수련에서 종교와 영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정숙 의원의 법안은 “심리학관련 과목”이라는 한정된 학과(심리학과)에 전문성을 배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학제와 과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전문성의 규정은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종교와 영성적 주제 역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최종윤 의원과 전봉민 의원 및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심리학이라는 생물학에 기반한 인간이해를 포함하면서도, 상담학이라는 다양한 인간이해의 학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학회는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안은 이 세 법안의 전문성 규정에 동의하며, 심리상담의 전문가는 특정 학과가 아니라 다학제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은 최종윤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법안과 달리 자격규정에 1급과 2급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다양한 상담현장 및 심리적 돌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안은 다양한 대학/대학원 학제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전문영역(의료, 사회복지, 교육, 심리상담, 미술/음악/놀이치료 등)과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학문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직역에서 상담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은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담사법안은 “전문성”과 “포괄성”을 원칙으로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제화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1급과 2급의 자격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학문적 차원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핵심문제는 1급 상담사 제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현실적 차원에서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을 포괄해야 할 핵심과제는 2급 상담사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회복지

사 제도를 통해 학습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문상담자(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들이 활동하는 상담영역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대개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1. 정신건강상담, 2. 학교상담, 3. 직업상담, 4. 아동상담, 5. 대학생상담, 6. 애도상담, 7. 군상담, 8. 종교영성상담, 9. 재활상담, 그리고 10. 중독상담' 등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특정 영역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좀 더 전문화된 영역, 즉 '결혼·가족상담사', '아동상담사', '노인상담사', '종교영성상담사'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국가 자격증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연령, 인종, 성적 지향, 종교, 가족 패턴 및 장애'와 같은 영역에서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상담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한국의 심리상담과 관련한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은 심리상담과 관련한 법제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련된 여러 법안들과의 통합적 논의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제 20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상담사법을 바라며

선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원장,
불교명상상담협의회장)

안녕하세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담사법이 발의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노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담을 배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함이었음을 알고, 깊은 동지의 의식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말 속에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성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것처럼 이제는 질환은 '의사 및 의료계'가 국민의 마음 건강은 '상담사'를 비롯한 '상담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을 '의왕(醫王)'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을 진단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담사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야 하고, 충분한 실습을 통한 경험을 쌓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자격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 예로 불교의 '명상상담'의 경우도 여러 민간자격을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학과가 설립되어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불교상담과 명상을 접목시켜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는 제대로 된 교육커리큘럼이 없이 진행되는 민간자격증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양질의 평준화되고 매뉴얼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만 불교의 '명상상담'도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상담사법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마음건강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학문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법이 제정되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기존의 상담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게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 '불교 명상상담'과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스페셜리스트들 또한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특수 영역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영역이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토론회가 명실상부 국민과 상담사들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작은 파이를 독점하기 보다는 가능한 큰 파이를 만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작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명상상담협의회장 선업 합장

- 공동주최: 심상정의원, 최종윤의원, 주호영의원, 강은미의원,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정과 함께하는 상담사법추진 연대,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 협찬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한국교정상담학회, 한국군경소방상담학회, 한국기업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한국심리치료상담학회,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한국중독상담학회, 한국진로상담학회, 한국집단상담학회, 한국초월영성상담학회, 한국학교상담학회, 한국NLP상담학회,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불교명상상담단체협의회, 한국치유상담협회
- 행사 준비 및 진행
 - 실무대표 : 김수임(총괄) 박철형 이형국 정문주
 - 운영진(가나다순) :
고정은 김혜경 김희선 김희수 김창대 라수현 박현민 손은령 이영애
 - 편집간사 : 이진현

